

#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## 제 3 장 교과와 학점

**제15조(교과과정)** ①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「교과과정에 관한 규정」, 「특수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규정」을 둔다.

**제16조(이수과목)** ① 학점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학과별 그리고 전공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.

③ 학생은 자기 전공과 유사한 학과의 개설강좌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, 학생의 전공과 다른 학과의 개설 강좌는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.

④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 이외의 과목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, 입학한 학과가 하위 학위의 취득학과(편입생의 경우 편입전의 학과)와 다를 경우 학과 또는 전공과정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부과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며, 이수자에게 할 수 있다. 다만, 선수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되지 않는다.

**제17조(수료학점)** ①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<별표 3>과 같이 한다.

② 대학원의 각 과정 수료의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, 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에서 부과한 이수학점의 취득과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③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「자격시험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**제18조(학점당 이수시간)** 교과목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**제19조(학기당 수강신청)** ① 대학원의 모든 과정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초급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초급과목 학점 인정을 위하여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신학대학원의 매학기 수강학점은 20학점 이내, 교육대학원은 12학점 이내, 경영행정대학원은 12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이를 초과할 경우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. [개정 2013. 3.

1]

③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「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**제20조(대학원 초급과목)** ①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부 학생은 대학원 초급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1. 6학기 이상 이수한 자.
2. 평점 평균 4.0 이상인 자.
3. 주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.

②본교 학부 학생으로서 대학원 초급과목을 이수하여 평점 3.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의 초급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 소요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.

**제21조(선수과목)** ①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선수과목(전공 또는 교직) 이수가 필요한 자는, 매학기 3학점 이상, 총 28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학과(전공)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2조(자격증 취득)**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점 3.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, 그에 따른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자격증 취득 규정」으로 정한다.